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33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이정헌・김 현・서영교

박홍배 · 허성무 · 박민규

채현일 • 박지원 • 김승원

정동영 • 이훈기 • 김영환

박용갑・조인철・황정아

강준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 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로맨스스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의 경우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로맨스스캠은 친교관계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여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

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여 그피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법률 제 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를 "공급을 가장한 행위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조의6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고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송금을 하는 경우
- 4. 고객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외송금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	2
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	
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	
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	
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u>공</u>	
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	공급을 가장한 행위 및 「유
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	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
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	률」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는
한 행위는 포함한다.	<u>제외한다</u>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의2. ~ 7. (생 략)	2의2. ~ 7. (현행과 같음)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	①
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략)

② ~ ④ (생 략)

- 1. 2. (현행과 같음)
- 3. 고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송금을 하는 경우
- 4. 고객이 전신송금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해외송금하는 경우
- <u>5.</u>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